

출판부 규정

제정 2011. 6. 29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출판부는 호서대학교 부설 “출판부”라고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“출판부”는 도서 및 비도서(온라인 상의 콘텐츠)를 포함한 인쇄출판물을 통하여 저술을 장려하고, 대학 홍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.

제3조(소재지) 본 “출판부”는 호서대학교(이하“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“출판부”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학교 명으로 인쇄되는 제반 연구서적, 번역서, 논문집 및 교재 등 각종 인쇄물을 출판, 판매 및 관할
2. On - line상에서 이용 가능한 제반 콘텐츠 관련 사업
3. 기타 본 “출판부”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5조(조직 및 기능) ① “출판부”는 목적에 부합한 관련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직과 관련한 분야를 둔다.

1. 출판. 인쇄 분야 : 학내 서적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
2. 대외협력분야 : 교내외 관련 출판관련 업무 및 관련된 타 기관들과의 업무 교류 및 협력 담당
3. 이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임원) 본 “출판부”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부장 : 1명
2. 간사 : 1명
3. 감사 : 1명
4. 기타 필요한 인력

제7조(출판부장) ① 출판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출판부장은 출판부를 대표하며, 출판부의 전반 사무를 관장한다.

③ 출판부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자이며, 사법적 최종 책임자이다.

제8조(간사 및 감사) ① 간사는 “출판부”의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 사무를 관장하며, 출판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판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년 1회 이상 “출판부”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3 장 위원회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“출판부”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장은 출판부장이 맡고, 기타 위원은 간사, 감사 등 임원은 교내 전임교원 중에서 "출판부"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중 간사를 둔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1. "출판부" 규정의 개정
 - 2. "출판부"의 해산
-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정책
 -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- 3. 예산 및 결산
 - 4. 출판도서 선정(신설 2019. 2. 28)
 - 5. 기타 "출판부"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각종위원회) "출판부"의 전문분야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
제 4 장 교양과목 교재 출판(신설 2019. 2. 28)

- 제11조 (교양과목 교재의 출판)** 대학 교양교과목의 교재 출판은 대학 부설 출판부에서 전담하되, 출판 도서의 종류는 제9조 제6항 제4호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(신설 2019. 2. 28)
- 제12조 (교양과목 교재의 저작권)** 더:함교양대학 및 출판부에서 기획·출간한 필수교양교재의 저작권은 본 대학교가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개인 연구로 출간된 순수 저작물의 경우 교양과목 교재 용도로 출판부에서 출간하더라도 저작권은 본래 저자에게 있다.(신설 2019. 2. 28)
- 제13조 (교양과목 교재 출판의 결정)** 교양과목 교재의 출판은 교양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심의 후 출판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(신설 2019. 2. 28)

제 5 장 운영 및 재정(장 변경 2019. 2. 28)

- 제14조(재정)** ① 본 "출판부"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(조 변경 2019. 2. 28)
 - 1. "출판부" 사업 수익금
 - 2. 교비 보조금
 - 3. 기타 기관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
- ②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5조(자원사용) 재원은 학술지 발간, 학술발표회 개최 및 자료 보급, 출판경비, 연구활동비 등으

로 사용하며, 특별한 경우 "출판부" 관련 주요행사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.(조 변경 2019. 2. 28)

제 16조(서류 및 장부의 비치) "출판부"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(조 변경 2019. 2. 28)

1. 위원회의 회의록
2. 조직 및 소속인의 명부
3. 회계 관계 서류
4. 운영 기자재를 포함한 재산목록

제 17조(비밀엄수의 의무) 본 "출판부"의 임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(조 변경 2019. 2. 28)

제 18조(재산의 귀속) "출판부"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대학교에 귀속한다.(조 변경 2019. 2. 28)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.